

대학 무용전공자의 예술인복지법 현황 및 인식도 조사

하지원 순천무용단 기획행정¹⁾

초록

본 연구는, 대학 무용전공자들의 무용예술창작활동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며, 무용예술창작활동 증진 및 생활안정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현 시대의 문화예술은 개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에 큰 기여를 하며 국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급변하는 사회에 맞추어 변화하는 문화예술과는 다르게 예술인의 권리 및 이들을 위한 복지제도는 현실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 간 등한시되어온 예술인의 기본적 지위와 권리를 위한 사안으로 2011년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되었다. 이후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한 다양한 사업 증진, 각종 제도 등 예술인 복지정책을 위한 움직임이 마련되었지만, 창작활동이 주된 무용분야는 작업시간 책정의 한계 및 사회보험 보장의 어려움과 같은 문제를 여전히 겪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은 제도적 보호에 취약한 무용분야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현 상황을 반영하는 실질적인 정책 개선이 없다면 앞으로도 예술인복지제도의 수혜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무용전공자를 대상으로 예술인복지법 현황 및 인식도 조사를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용전공자의 예술인복지법 인식' 설문 결과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가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둘째, '예술인복지사업을 알게 된 경로'는 '전혀 모른다'가 가장 높았으며, '시행사업 중 참여했거나 참여하고 싶은 사업'의 설문 결과는 '창작준비금 지원' 및 '예술인패스', '예술 활동 증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무용예술인을 위해 가장 필요한 복지'의 결과를 살펴보면 '예술활동 창작 준비금'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대학 무용전공자들은 예술인복지법과 관련된 전반적인 인식이 미비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예술활동창작준비금이나 관련 지원제도와 같은 무용공연사업을 통한 경제적 복지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다. 이는 대학 무용전공자들이 체감하는 예술활동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경제적 어려움이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키워드

예술인복지법,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무용 복지, 인식도 조사, 무용예술



1. 서론

문화예술은 '현대인의 삶'이며, 현시대는 문화예술이 국력으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문화예술의 형태 또한 시대가 변화되면서 확대와 발전이 이뤄지고 있으며(김영은, 2021), 문화예술은 국가 경쟁력을 키워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가 또한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인 제도의 틀을 마련하고 있다(주세은, 2014).

2011년 11월 극심한 생활고로 인해 사망한 故 최고은 작가로 인해 정부는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를 보장, 보호하고 예술인을 근로자로 인식하며, 창작활동을 통해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예술인복지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예술인 고용보험'을 통해 2012년 11월 19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되었으며, 2020년 5월 11일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었다.

이처럼 예술인복지법에 대한 제정이 꾸준히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예술 분야는 고용불안정, 경제적 여건의 문제점이 있다(정지영, 정호진, 2018). 특히 무용분야에서 활동하는 무용예술인의 경우 복지제도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며, 예술인복지제도는 다수 무용예술인의 현실에 귀 기울이기는 어려운 실정(지하은, 2021)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무용예술인은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창작활동을 통한 작업시간 산정의 한계, 사회보험 등에 대한 지원정책의 개선은 미진한 상황(노문이 외, 2016)으로 무용예술인을 위한 직접적 복지정책은 여전히 미비하며, 안전한 보장 및 공공의 보호에 취약하다(이신미, 2016).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 무용전공자를 대상으로 현행하는 예술인복지법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여 예술인복지법 및 복지제도의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며, 본 연구를 통해 대학 무용전공자를 위한 복지제도 및 지원사업을 제공하는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고자 한다. 또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무용예술인의 향후 법적인 보호아래 안정적인 무용예술창작활동 증진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창의융합 무용예술창작활동 방향에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예술인복지법 제정 배경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문제점이 수면위로 드러나자 예술인은 복지제도의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였으며, 1980년 문화체육관광부도 그 노력에 가담했다. 2005년 보험금 지급을 낮추기 위해 일일 잡역노동자로 예술가를 규명하여 서류를 처리한 조각가 故 구분주 씨의 교통사고 사망 이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 예술인들은 복지와 지위에 대한 당위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결정적으로 극심한 생활고로 생을 마감한 작가 故 최고은씨의 사망으로

표 1 예술인복지법 추진경과(김태완, 정희선, 2021)

연도	내용
1981	예술인 의료보험 조합 설립
2002	한국문화예술인복지 조합 설립 추진 (민족문화작가회의, 한국문인협회, 민예총, 예총) 문화예술인 복지 조합 설립 공약(한나라당 16 대 대선)
2003	전문문화예술노동조합출범
2004	4 대 보험 개선을 통하여 예술인 복지증진 가칭 '한국예술인공제회' 설립 운영 예술인의 사회적 신분보장을 위한 제도 도입 예술인 공제회 제도 도입 공약(열린우리당 17 대 총선) '예술인 공제회 설립 및 운영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예술인복지제도'도입 방안 제시 (문광위 이광철 의원, 보건복지위 유시민 의원) 문화예술인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한 법안
2005	연극인복지재단 출범 전국영화산업노조 출범
2006	예술인복지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서울연극협회·한국연극인복지재단)
2007	전국미술인노동조합출범 재)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설립 전국영화산업노조 산별교섭 타결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포럼 (예술경영지원센터·한국연극인복지재단·전문무용수지원센터)
2008	영화인 노후 복지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한국연극인복지재단·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인복지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 (한국연극인복지재단·정병국 의원)
2009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공청회(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안 (문화예술인 공제사업: 국회 제출, 정부 입법(공고 2009-145 호)) 예술인복지법안(문광위 정병국 의원) -예술인복지법안(문광위 서갑원 의원)
2010	영화인공제조합 설립방안연구(영화진흥위원회)
2011	예술인복지법 발의(전병헌 위원, 일명 최고은법) 예술인의 지위와 복지에 관한 법률안(문광위 최중원 의원) 예술인복지 어떻게 할 것인가? (문광위 정장선 의원) 예술인복지법 국회 통과
2012	예술인복지법 시행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2013	예술인복지법 1 차 개정안 통과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지원사업(보험료 30 %)실시
2014	예술인복지법 1 차 개정안 시행 예술활동 증명사업 실시 예술인 사회보험 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 사업 (보험료 50 %) 실시 예술인 경력 정보시스템 실시 예술인 긴급복지지원제도 도입(조영환, 2020)
2015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설훈, 신성범 의원) 「예술인복지법」2 차 개정안 통과
2016	예술인복지법 2 차 개정안 시행 서면계약 법적 의무화 실시 불공정행위 개편 및 보완
2018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 권리보장 명시,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한 예술인 보호 시책 마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에 예술계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사업 추가

예술인복지법의 시행은 가속화되었으며, 2011 년 10 월 28 일 예술인복지법 통과 및 2011 년 11 월 예술인복지법이 공포되면서 2012 년 11 월부터 예술인복지법이 시행되었다(강욱진, 2016). 이에따라 국회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2011 년 11 월 예술인복지법을 제정하였으며, 2012 년 11 월 예술인복지법이 시행되었으며, 예술인복지법 추진경과는 표 1 과 같다.

2.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12 년도에 공공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복지를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예술발전에 기여하는 것에 목적을 둔 기관이다. 또한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5), 재단은 예술인의 직업적 직위 및 권리보호, 복지증진에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한 예술인들의 사회보장 및 직업안정, 복지 지원 프로그램 등의 개발과 실행을 주요 업무로 설정하고 있다(이민, 김지영, 2016).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은 예술활동증명, 예술인페스, 창작준비금 지원-창작 디딤돌, 예술인 파견지원-예술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용자), 예술인 사회보험료(국민연금)지원, 예술인 산재보험, 예술인 의료비 지원, 표준계약서 보급 등이 있다. 지원사업의 대상은 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국악, 연극, 영화, 연예, 만화가 있으며, 무용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의 지원대상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현행하는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2 와 같다.

표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²⁾

사업	내용
예술인페스	예술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제도이며, 예술인의 문화향유 기회의 확대를 위한 사업
예술활동증명	11 개의 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획 및 기술지원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활동하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위해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 활동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예술인복지사업의 참여를 위한 기본조건
창작준비금지원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 요인으로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예술활동 소득이 낮은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 일반예술인, 원로예술인, 신진예술인으로 분류하여 진행
예술인 파견지원-예술로	예술인과 사회의 상호협력을 통한 새로운 예술직무영역 개발하며, 창의적인 사회를 토대로 예술가 스스로의 예술적 개입이 이뤄져 예술인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예술인의 중장기적인 복지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예술인과 고용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며,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보장 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
예술인 의료비 지원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며, 예술인의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만든 사업
예술인고용보험 예술인산재보험	예술인의 사회보장 사각지대 및 실업 위기 대처를 위한 사업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활동하는 프리랜서 예술인도 직업예술활동시 발생한 재해를 산재로 인정받아 보상 받게 하는 사업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용자), 전세자금대출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는 예술인을 위한 사업이며, 예술인의 주거 안정 및 창작공간의 확보로 예술인의 생활기반 마련과 창작환경개선에 도움을 주는 사업

2)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1). 202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3. 연구방법

3.1. 연구절차

첫째, 문헌조사를 통해 예술인복지법에 대해 정리하여 예술인복지실태 현황을 분석하였다. 둘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화예술 지원정책을 통한 무용예술인의 복지 사업현황 및 복지정책연구자료를 웹사이트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셋째, 대학 무용전공자를 중심으로 예술인복지법의 인식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복지제도 현황과 인식도는 어떠한지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절차를 통한 연구모형은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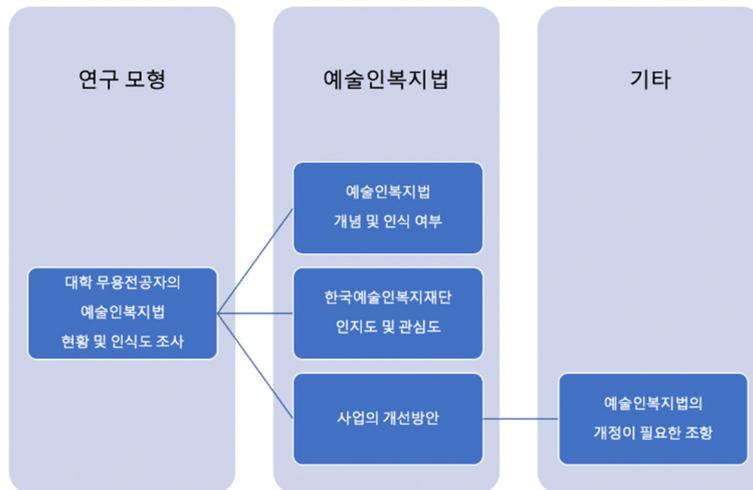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3.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서울지역의 무용을 전공으로 하는 대학의 학부생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여 총 340 부의 설문지를 배포, 320 부 회수, 최종 304 명의 대상자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설문지 문항은 강욱진(2016)의 음악인을 위한 예술인복지법 개선방안은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구성하였으며, 선행연구를 통해 음악예술인의 활동 현황과 복지 실태 그리고 예술인복지법을 통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의 특성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따라서 본 설문지는 무용전공자의 활동관련 사항에 해당하는 분야 및 특성 3 문항, 예술인복지법 제 1 장 총칙의 제 2 조 예술인의 개념 및 범위 2 문항, 예술인복지법 제 4 장의 제 10 조 재단의 사업 4 문항과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항, 기타 개정이 필요한 조항 1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통계프로그램 SPSS 28.0 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예술인복지법,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인식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의 관심도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사용했다. 또한, 활동 분야 및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3.3. 측정도구

강옥진(2016)의 음악인을 위한 예술인복지법 개선방안에 나타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음악예술인의 활동 현황과 복지실태, 예술인복지법 제 1 장에서 제 3 장, 제 4 장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의 특성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 문항은 예술인복지법 제 1 장 총칙의 제 2 조 예술인의 개념 및 범위, 예술인복지법 제 4 장의 제 10 조재단의 사업,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그리고 기타에 해당하는 예술인복지법의 개정이 필요한 조항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통해 대학 무용전공자를 중심으로 예술인복지법에 대한 인식 및 현황을 조사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지원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현재 대학 무용전공자의 예술인복지법을 통한 복지제도에 대한 현황과 인식은 어떠한지 추출하여 결과를 도출했다.

4. 연구결과

4.1. 예술인복지법 인식 여부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권에 소재한 대학교를 중심으로 최종분석에서 총 304 부의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 조사대상자의 특성 중 전공은 한국무용 151 명 (49.7 %), 발레 93 명 (30.6 %), 현대무용 60 명 (19.7 %)으로 구성되었다. 예술인복지법 인식여부에 대해 살펴본 결과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가 102 명 (33.6 %), ‘설문조사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다’ 84 명 (27.6 %), ‘전혀 모른다’ 65 명 (21.4 %),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 30 명 (9.9 %), ‘잘 알고 있다’ 23 명 (7.6 %)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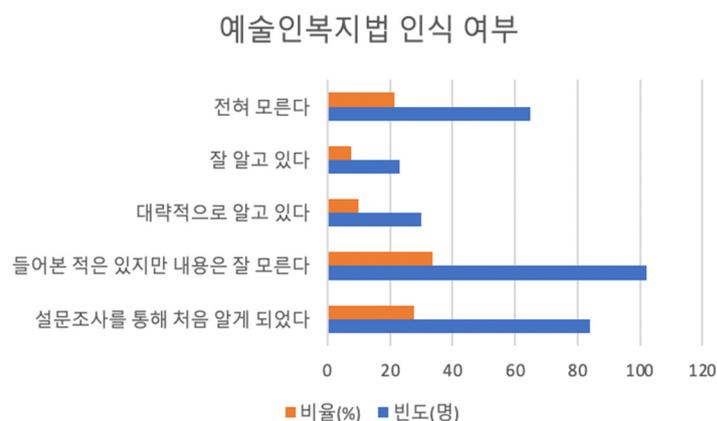


그림 2 예술인복지법 인식 여부

4.2. 예술인복지사업 인식 여부

예술인복지사업 인식 여부에 대해 살펴본 결과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가 82 명 (27.0 %), 설문조사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다’ 81 명 (26.6 %), ‘전혀 모른다’ 78 명(25.7%),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 38 명 (12.5 %), ‘잘 알고 있다’ 25 명 (8.2 %)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예술인복지사업 인식 여부

4.3. 시행사업 중 참여했거나 참여하고 싶은 사업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참여했거나 참여하고 싶은 사업에 대해 살펴본 결과 창작준비금지원이 97 명 (31.9 %), 예술인패스와 예술활동증명 각 36 명 (11.8 %), 예술인고용보험 35 명 (11.5 %), 예술인의료비 지원 32 명 (10.5 %),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 전세자금대출 22 명 (7.2 %), 예술인산재보험 19 명 (6.3 %),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14 명 (4.6 %), 예술인사회보험료지원 13 명 (4.3 %)의 순으로 나타났다.

4.4. 사업지원으로 가장 큰 도움이 기대되는 부분

사업지원으로 가장 큰 도움이 기대되는 부분을 살펴본 결과 경제적 도움이 143 명 (44.1 %), 무용예술활동에 대한 지속성 101 명 (33.2 %), 진로 및 취업 목표설정 43 명 (14.1 %), 권익보호 23 명 (7.6 %), 기타 3 명 (1.0 %)순으로 나타났다.

4.5. 무용예술인을 위해 가장 필요한 복지

무용예술인을 위해 가장 필요한 복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예술활동 창작준비금이 84 명 (27.6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국민연금 등 4대보험 지원제도 61명 (20.1%), 실업급여 57명 (18.8%), 예술인산재보험 36 명 (11.8 %), 무대 공간지원 23 명 (7.6 %), 진로 및 직업상담 22 명 (7.2 %), 직업적 직위와 권리 보호 20 명 (6.6 %), 기타 1명 (3 %)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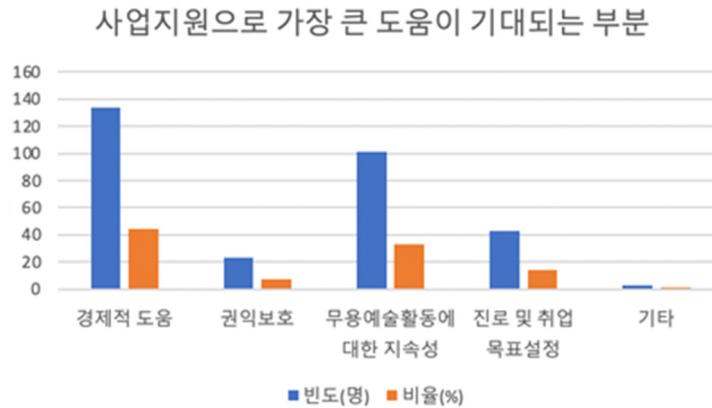


그림 4 사업지원으로 가장 큰 도움이 기대되는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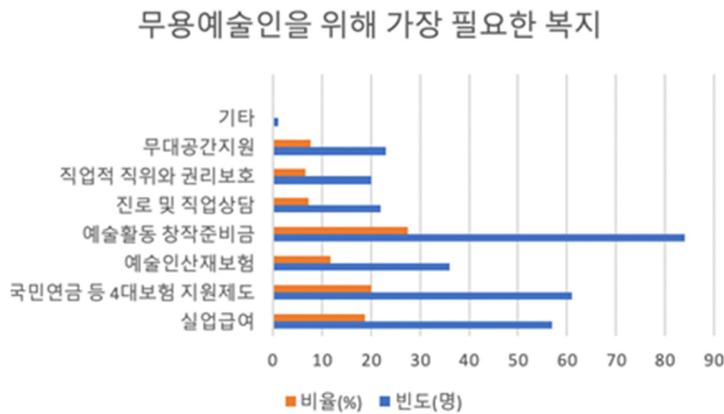


그림 5 무용예술인을 위해 가장 필요한 복지

5. 논의

본 연구는 대학 무용전공자를 중심으로 예술인복지법 현황 및 인식도 조사를 분석하였으며, 지금까지 살펴본 주요 결과에 대한 분석 및 선행연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첫째, 대학 무용전공자의 예술인복지법 인식을 살펴본 결과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영환(2020)에 따르면 예술인복지법에 대한 인식도는 전반적으로 낮다는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고 사료된다. 또한, 예술인복지사업의 인식 여부를 살펴본 결과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하은(2021)에 따르면 지원사업 인식 경로에 답을 못할 정도로 무용예술인들의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이 무지한 대상자가 3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며, 현저히 낮은 예술인 복지사업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안해 봐야 하며, 예술인복지사업의 인식 경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사업에 대해 적극적이며, SNS 를 활용한 홍보 방식이나 각 대학 및 예술단체에 주기적으로 홍보물을 보내는 등 활발한 홍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둘째, 무용예술인을 위한 가장 필요한 복지에 대한 문항의 결과는 예술활동 창작준비금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박계배(2016)에 따르면 예술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장르와 연령별 맞춤형 정책사업을 연구하며 세심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한다. 이는 본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뒷받침한다. 이를 뒷받침하여 대학 무용전공자들이 사회에 나가 무용예술인으로 활발히 활동하기 위해 실질적인 창작활동을 지원받기 위한 창작역량의 강화를 다각적인 방안과 넓은 지원의 폭에서 연구한다면 무용 분야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셋째, 사업지원으로 가장 큰 도움이 기대되는 부분의 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도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김지영(2016)의 연구를 살펴보면 예술인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경제적 지원이 가장 높아 본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무용전공자들의 경우 현재 경제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며, 예술관련 공기관에서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활동의 경제적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으로 사료된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 무용전공자를 대상으로 현행하는 예술인복지법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예술인복지법 및 복지제도의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연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무용전공자의 예술인복지법 인식은 어떠한가에 대해 살펴본 결과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 무용전공자의 예술인복지법 인식이 전반적으로 낮다고 보인다. 따라서 대학에서부터의 교육을 통하여 인식 경로 활성화를 위한 예술인복지법 및 복지제도와 관련된 교과목을 개설하며, 지원사업의 홍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둘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참여했거나 참여하고 싶은 사업을 살펴본 결과 창작준비금 지원과 예술인 패스 및 예술 활동 증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경제적인 도움이 시급하며, 무용예술인이 창작활동을 하는데 있어 적합한 환경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인식 개선방안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무용예술인을 위해 가장 필요한 복지의 결과를 살펴보면 예술활동 창작 준비금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무용전공자의 무용예술문화의 전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장르별 정책사업과 맞춤형 정책사업을 세심하고 섬세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론을 통해 대학 무용전공자들이 예술인복지법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인식이 미비한 상태이며, 예술인복지법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으로 보여졌다. 예를 들어 예술활동창작준비금이나 관련 지원제도와 같은 무용공연사업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으며, 이를 가장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대학 무용전공자들이 느끼는 예술활동의 현실적인 부분이 경제적인

것과 직결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본 연구를 통해 대학 무용전공자의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복지제도 인식이 미비한 것뿐만 아니라 무용 예술 창작활동 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부족한 실정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대학 무용전공자의 복지제도가 향후 무용예술인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 및 보완이 되어야 한다. 또한, 전반적으로 예술인복지법에 대한 대학무용전공자들의 낮은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복지제도에 관련된 교과목을 개설해야 하며, 창작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고 보다 전문적인 무용예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정책사업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를 보완한다면 무용예술인이 경제적 문제로 창작활동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창작 및 공연활동을 창의융합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 향후 발전된 무용예술창작활동 방향에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반드시 무용예술인의 적합한 복지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강옥진 (2016). 음악인을 위한 예술인 복지법 개선방안.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 www.law.go.kr에서 2021년 10월 24일 인출
- 김지영 (2016). 국내 예술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완, 정희선 (2012. 1). 예술인 복지법 통과 의의와 과제. 보건복지포럼, 183, 66-75.
- 노문이, 현택수, 이정서 (2016). 예술인복지법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한국 콘텐츠학회, 16(5), 440-448.
- 박계배 (2016).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책사업 참여자들의 참여동기가 이미지, 참여만족,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민, 김지영 (2016).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예술인 복지제도의 현황과 과제: 표준계약서 적용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무용학회, 16(1), 25-34.
- 이신미 (2016). 예술인복지사업의 공연예술분야 현황분석과 만족도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예술경영지원센터 (2021). www.gokams.or.kr에서 2021년 9월 28일 인출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2021). www.kawfartist.kr에서 2021년 10월 4일 인출
- 정지영, 정호진 (2018).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활동 지원에 대한 길버트와 테렐 분석틀의 적용과 활성화 방안.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6(7), 409-418.
- 조영환 (2020). 대중음악인을 위한 예술인 복지법의 인식도조사. 경희대학교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세은 (2014).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예술활동 및 인식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 광주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동신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지하은 (2021). 무용인 복지에 관한 인지도 및 만족도 연구: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5). <http://www.kawf.kr/>에서 2022.04.15 일 인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1). <http://www.kawf.kr/>에서 2022.04.15 일 인출.

Current Status and Recognition of Artist Welfare Act of College Dance Majors

JI-WON HA Planning and Administration of Sun Heon Dance Company

Abstract

Contemporary society's culture and arts significantly contribute to the quality of life and happiness of individuals, and plays an important role in a nation's power. However, unlike the culture and arts that change with the rapidly changing society, the rights of the artists and the welfare system for them have not been provided with realistic aids. The Artist Welfare Act was enacted in 2011 for the basic status and rights of artists, which had been neglected, and the Korea Artist Welfare Foundation was also established. Thereafter, measures have been taken for the artists' welfare such as promotion of numerous businesses and various system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However, the dance field, where the focus is creative activities, still suffers from difficulties such as the limitation of measuring working hours and difficulties in securing social insurance. These facts describe the negative reality of the dance field and the vulnerability for the lack of social protections. Therefore, unless there are practical policy improvements that reflect the current situation, it will be difficult to reap the benefits of the artist welfare system in the future. In this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on the status and awareness of the Artist Welfare Act for dance majors, an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regarding the "Awareness of the Artist Welfare Act of Dance Majors" question, "I have heard of it, but I do not know the contents." showed the highest response. Second, regarding "the path I found out about the artist welfare project," "I don't know at all" was the foremost response. For "the project that I participated in or would like to participate in," "supporting fund for artistic creation," "artist pass," and "proof of artistic activity" got the highest response. Third, for "the most necessary welfare for dance artists," "supporting fund for artistic creation" was the leading answer.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college dance majors are in a state of insufficiency in overall awareness related to the Artist Welfare Act. In addition, the results showed the greatest interest in economic welfare through dance performance projects, such as "supporting fund for artistic creation" and related support systems.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practical difficulties of artistic activities and economic difficulties experienced by college dance majors are closely related. Thus, this study provides useful data for artistic choreographic activities of university dance majors, suggesting means to promote them and improving their living stability. These findings can b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culture and arts industry as a foundation for setting the direction of the "creative fusion of dance and artistic activities."

Keyword

Artist Welfare Act, Korea Artist Welfare Foundation, Welfare for Dance, Awareness Survey, Dance Arts